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천준호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5336
----------	-------

발의연월일 : 2025. 12. 17.

발의자 : 천준호 · 문진석 · 장종태

최민희 · 문금주 · 정준호

박정현 · 한정애 · 서미화

박용갑 · 이성윤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재개발사업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기 위하여 토지등소유자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확보하도록 규정하여 재개발사업 추진의 공공성 및 투명성 확보를 도모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주택 시장 및 정비사업 여건 변화에 발맞춰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조합설립 동의율을 종전 주택단지 전체 구분소유자 4분의 3 이상에서 100분의 70 이상으로 완화한 바 있는데, 동의율 하향조정은 정비사업의 초기 단계를 원활하게 진행시키고, 장기간 정체되어 있던 사업에 활력을 불어넣어 사업 추진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예측됨.

재개발사업 역시 재건축사업과의 제도적 형평성을 제고하고, 현행 동의율 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업 지연을 해소하여 정비

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재개발사업 추진위원회가 조합설립인가를 받으려는 경우 토지 등소유자의 동의율을 재건축과 동일한 수준인 100분의 70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여,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 35조제2항).

법률 제 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4분의 3”을 “100분의 70”으로, “2분의 1”을 “100분의 50”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5조(조합설립인가 등) ① (생 략) ② 재개발사업의 추진위원회 (제31조제7항에 따라 추진위원 회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에는 토지등소유자를 말한다) 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등 소유자의 <u>4분의 3</u> 이상 및 토 지면적의 <u>2분의 1</u> 이상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제16조 에 따른 정비구역 지정 · 고시 후 시장 · 군수등의 인가를 받 아야 한다. 1. ~ 3. (생 략) ③ ~ ⑩ (생 략)	제35조(조합설립인가 등) ① (현 행과 같음) ② ----- ----- ----- ----- ----- ----- ----- ----- ----- ----- ----- ----- ----- ----- ----- ----- 1. ~ 3. (현행과 같음) ③ ~ ⑩ (현행과 같음)